

겸직허가및신고지침

제정 2015. 6. 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겸직허가및신고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겸직허가와 관련한 심사의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허가의 범위) ① 규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주택임대, 상가임대, 사무실임대, 주차장 임대 등 회원의 자산관리 운용을 위한 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규정 제2조 제2호의 「사용인」은 등기임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의 고용 관계를 말하고 명칭, 계약형식, 보수의 유무는 불문한다.

③ 규정 제2조 각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범위에는 외국법인(대한민국 법인 이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대한민국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 거점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심사수수료) 회원은 규정 제5조의 겸직허가신청시 신청 1건에 대하여 금 20,000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12조 허가갱신신청의 경우에는 금 10,000원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규정 제2조 제1호의 허가를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업무계획 개요서
2. 기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정 제2조 제2호의 허가를 신청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사업목적 개요서
2.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3.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본인확인서

③ 규정 제2조 제3호의 허가를 신청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개요서

2. 정관
3.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겸직하지 않음을 명시한 본인확인서

제4조2(겸직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①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신고를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업목적개요서
2.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3.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본인확인서

②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신고를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개요서
2. 정관
3.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본인확인서

제5조(겸직허가의 구체적 기준) ①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규정 제8조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복수사무소의 설치금지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변호사 직위의 부당 이용 우려가 있는 경우
3. 명의대여 우려가 있는 경우
4.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업무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6.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하여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동업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7.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업무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사회정의에 위반되거나 범죄 행위를 조장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2. 영업, 판매방법, 선전 광고 방법 등이 일반 소비자를 해할 위험이 있을 때
3. 업무의 성격 또는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을 때

③ 이사, 사외이사, 감사의 겸직허가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의 직위로 겸직을 허가받은 회원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는 다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심사기준은 제2항과 같다.

제6조(송무목적의 경우의 겸직허가 취소기준) ① 규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겸직허가 취소기준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겸직허가를 받은 회원이 당해 회사의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수입 또는 처리하였는지 여부
 2. 겸직의 형태 및 업무내용
 3. 당해 회사의 목적사업
 4. 당해회사가 연간 소송당사자가 된 송무사건의 수
 5. 본회 소속 회원의 연 평균 수입사건수
- ② 동일한 회사에 2인 이상의 회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은 회원들이 처리한 송무사건 수를 합산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제7조(겸직허가취소 통지의 효력) 규정 제16조에 의해 겸직허가가 취소된 회원은 겸직허가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업무를 종료하고 겸직사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06. 23.)

이 지침은 2015. 6. 23.부터 시행한다.